

가권(家權)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서정민*

1. 서론
2. 양부인 '가권'의 범위; 주부(主婦), 가장(家長), 문장(門長)
3. 가권의 모녀 승계와 그 배경
4. 가권의 모녀 승계를 통해 드러나는 가문의식의 지향
5. 결론

<국문초록>

<소현성록>은 대하장편소설의 초기작으로서 17세기 중후반에 산출되었다. 이 시기는 이 작품이 가문소설이라는 내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17세기 중후반은 조선시대 가족사 흐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17세기 중후반 가족 체계의 변화는 당대 지배 이념, 경제 체제, 여러 가지 관계 질서 등 사회 전영역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인과적 선후를 애초부터 설정하기 어렵도록 사회 전반에서 다발적으로 드러나 각각의 속도와 개별적인 형편에 맞춰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등장한 <소현성록>은 가문 형성이라는 집단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양부인에서 소월영으로 이어지는 가권의 모녀

* 홍익대학교 교양외국어학부 조교수.

승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집단의 구성은 부계 중심의, 혹은 부계 직계중심의 조선 ‘후기’적 관계가 아닌, 양계를 아우르는 방식을 취했다.

출가외인의 논리로 딸을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권을 승계시키는 ‘발칙하기’까지 한 이런 설정이 여성주의적 해방의 논리나 자유분방함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가문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 스스로 구성원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이 보여주는 가문의식은 생존과 직결된 절박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하장편소설의 초기작으로서 <소현성록>의 이러한 가문의식적 지향은 후대 작품군과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본고가 살핀 <소현성록>의 가문의식은 대하장편소설 장르군이 담지하고 있는 상층별벌의식의 일환으로서 가문의식이 각 시기에 따라 일정한 편차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초기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조선후기, 대하소설, <소현성록>, 가문의식, 가장(家長)

1. 서론

<소현성록>의 등장인물이 17세기 중후반이라는 점을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현성록>은 대하장편소설의 초기작이면서 가문소설이라는 내적 특질을 보이는데, 이런 점은 그 등장 시기가 조선시대 친족 체계의 변화라는 가족사적 흐름에 있어 분수령이라고 거론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17세기 중엽을 분기점으로 한 가족사적 변화를 일별해 보면, 우선 혼례에 있어 남귀여가혼이 친영례로 일반화 되는 것이 17세기 후반인데, 상속 관행에 있어서 전대 자녀균분상속에서 딸을 시작으로 차등분급이 보편화 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호주제에 있어서는 17세기까지 과부의 호주 승계가 이뤄지던 것이 18세기 이후로는 아들 승계로 변화하고¹⁾, 사대부가 가훈

1) 정지영, 『조선후기 호주승계방식의 변화와 종법질서의 확산:17-18세기 『단성호적』에 나타난

서는 18세기 와서 본격적으로 사대부 여성을 대상으로 시집 중심의 삶에 대해 교육한다.²⁾ 내외친이 망라되는 양계 친족에서 적장자 중심의 부계 친족체계로의 변화, 여기에 동반하는 양자의 입양, 그리고 혈족간 결속 강화를 모색하는 길에 형성되는 동족마을의 등장³⁾도 1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같은 사적 흐름의 간명함과 달리 실제의 양상은 상당히 중층적이고 개별적이었다. 상속방식은 경국대전을 위시한 조선전기의 법 규정을 후대까지 고치지 않은 채 관습법적 상태로 변모가 진행되어 그 변화는 대단히 느렸고⁴⁾, 가계 승계에 있어서는 호주 승계와는 별개로 가장권의 승계가 진행되었다.⁵⁾ 다양한 형편에 따라 단일하게 재단되지 않았던 개별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이러한 흐름은 조선 후기라고 해도 그 완성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17세기 중후반에 등장한 <소현성록>이 형상화하는 가문의 모습이 과도기적이거나 혹은 조선후기를 통해 수렴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본고의 전제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간 여러 선행 연구들이 은연중 조선·후기·적 가문의식이나 부계 직계 중심의 가부장적 관계 질서를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에서 본 논의는 출발한다.⁶⁾ 이제 조선·후기·적 틀에서 <소현성록>을 놓아주고 좀 더 유연

과부와 그 아들의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18권2호, 한국여성학회, 2002.

2) 김연순, 『18세기 중범사회의 형성과 사대부의 가정교화』, 『사회와 역사』83, 한국사회사학회, 2009.

3)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 『동양학』2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3.

4) 배상훈, 『조선후기 분할상속관행의 지속에 대한 소고』, 『한국민족문화』34, 2009

5) 정지영, 『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와 책임: 법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25집1호, 한국가족학회, 2013.

6) <소현성록>의 연구는 그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들 가운데 본고의 핵심 논의 대상인 작품 내 양부인의 역할이나 성격 및 작품의 가문의식 관련 주요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백순철(『『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31면)은 “성리학적 가부장제의 억압적 현실 속에서 이를 뚫고 나가려는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문벌로 상징되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여성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폐해였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17세기 사대부가 부녀자들을 주된 향유층으로 했던 한글 소설 작품에서 17세기를 기점으로 조선후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성되어 가던’ 그 제도의 억압적 현실이나 제도의 폐해를 확인하려는 것이 얼마나 적실할 것인가 의문이다. 또한 양민정(『<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12,

한 관점에서 <소현성록>이 만들어간 가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현성록>이 보여주는 가문의식의 특징적 지향이 드러날 것인데, 이러한 접근은 대하장편소설이 드러내는 상층별례의식을 시기적으로 세분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그 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논의의 초점은 소씨 가문 가권(家權)의 향배이다.⁷⁾

2. 양부인 ‘가권’의 범위; 주부(主婦), 가장(家長), 문장(門長)

‘가권(家權)’은 용어 자체만으로는 집안일을 주관하는 가사권 정도의 의미로 파악된다. 그런데 <소현성록>의 소씨 가문 내 최고 어른인 양부인이 행사했던 가권의 실상은 그리 소박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남편이자 가장이었던 소처사의 죽음 이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가문 내외사를 주관했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양부인이 가졌던 가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주부(主婦)로서 양부인- 우선 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역할은 주부이다. 주부는 상례(喪禮)나 계례(筵禮) 등 특정한 행사에 있어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인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행사에 따라, 행사의 주대상가 누군가에 따라 한 집안의 총부가 주부가 되기도 하고, 총

2002, 120면)은 “<소현성록>에서 여가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가문의식에 입각해 있다. 조선조 후기 사회의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있는 가문소설에서 가부장의 역할은 당연히 가문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그 가부장의 역할을 대신한 여가장의 위치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라고 했다. <소현성록>에 대한 접근 시각이 조선조 후기 사회의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있는 가문소설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

한편, <소현성록>을 다루는 연구자의 접근 시각이 이처럼 조선 후기적인 것과는 차별화되지만, 다음의 연구들도 <소현성록>의 내적 특징을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적 특징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은 동일한 맥락에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본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7) 인용 자료는 <소현성록>(15권 15책, 이대 소장본; 조혜란 등 역주, 『소현성록』1~4, 소명출판, 2010)을 주로 함.

부가 아닌 부녀가 주부가 되기도 한다.

조선시대 주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상례에서 주부를 선정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례의 여러 절차 가운데 초상 때의 주부와 우제 이후의 주부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초상에서는 망자의 아내가 주부 역할을 하는데, 우제 이후에는 상주(喪主)인 망자 아들의 부인 즉 며느리가 주부 역할을 하는 것을 두고 여러 세세한 현실 상황 속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⁸⁾ 주부는 상설적인 지위나 역할은 아니지만

- 8) 대표적인 사례로 상변통고(常變通攷) 제18권 상례(喪禮)조의 주부를 세우는 것에 대한 기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인용문은 한국고전전래연구회 주판 번역본으로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의 것을 인용함).

초상에는 망자의 처가 당연히 주부가 되니, 이때는 아직 총부(冢婦)에게 가사(家事)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제 이후에는 주상자(主喪者)의 처가 주부가 되는데, 제사의 예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하기 때문이다. ○ 문기를 “적손(嫡孫)이 승중(承重)했다면 적손의 처가 주부가 되는가? 적손의 어머니가 주부가 되는가?”라고 하자, 명제(明齋)가 말하기를 “초상에서는 적손의 어머니가 주부가 되고 우제와 부제 이후에는 적손의 처가 주부가 된다”고 했다. ○ 갈암이 말했다. “장자(張子)가 이미 ‘모자(母子)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논의를 하였는데, 사제가 이 설에 대해 좋다고 했으나 만약 상주에게 처가 없고 망자의 처가 노폐(老廢)함에 이르지 않았다면 또한 이 예에 구애받아서 마땅하지 않다.” ○ 선사(先師)가 말했다. “모자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장횡거(張橫渠)의 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다만 제사의 예를 범론(泛論)한 것이며, 반드시 상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장횡거의 논의가 이와 같다고 해도 《서의》와 《가례》의 뜻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가례》 ‘참례(參禮)’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는 늙었다고 보아 제사에 참여하면 특별히 주부 앞에 자리한다고 했다. 시제(時祭)에도 이 한 단락이 있으나, 상례에 세우는 주부는 망자의 처를 말하고, 없으면 주상자(主喪者)의 처를 주부로 세운다. 어머니와 아들은 존비의 체통이 지극히 엄하여 함께 일할 수 없다. 그러나 3년 안에는 모두 살아 있는 이를 섬기는 예를 쓰는데, 한 숨이 방금 끊어져 시해(尸骸)가 아직 썩을하기도 전에 케전(饋奠)의 여러 절차를 한결같이 주상자의 처에게 맡긴다면, 이는 시아버지가 죽은 경우의 예를 갑자기 사용하여 ‘살아 계신 듯이 섬긴다’는 뜻과는 같지 못하다. 우제 뒤에는 제례가 대강 이루어져 비록 초상 때와는 다르지만, 묘소가 겨우 이루어지고 반곡한 후 일중(日中)의 제사에 갑자기 초상 때 세운 주부를 바꾸어 전현(奠獻)의 여러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정리(情理)의 박절함은 논할 것도 없고 그 세우고 폐함에 절차도 없어, 아마 예의 대체(大體)에 장애가 있을 듯하다. 사계(沙溪)는 이미 이와 같이 말했기 때문에 증현손의 주상(主喪)에 조모와 어머니가 비록 계시더라도 주인의 처가 모두 승중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남중(南中)의 선배들은 모두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 조모나 어머니가 바야흐로 무거운 복을 입고 특별히 자리하여 제사에 참여하는데, 복이 없는 증현부(曾玄婦)로서 복이 없는 사람에게 장사 지낸 뒤에는 석 달의 상복 제도가 이미 끝났다. 전현(奠獻)의 절차를 대신하게 한다면 예의 뜻에 어찌 할지 모르겠다. 우복(愚伏)이 말하기를 ‘아들이 주인이고 어머니가 주부가 되면 과연 미안할 듯하다. 그러나 습(襲)과 함(含)과 곡하는 위치를 조금 나가거나 물러나서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게 하면 보는 이가 놀라지는 않을 듯하다’고 했으니 이제 이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상층 부녀자들이 삶의 과정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역할이자 권한이었고, 그런 만큼 주부로서 양부인의 역할이나 면모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다소 새삼스럽다.

◆ 가장(家長)으로서 양부인- 앞선 여러 연구들에서는 양부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여성 가장으로 지목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논의한 바 있다. 양부인의 가장 역할에 대해 ‘일단 아들이 장성하여 가부장이 되면 이야기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주인공 아들이 부각’된다고 보는 소극적 관점, 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양부인의 가장 역할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부여하는 경우 등 일정한 편차를 보인다.⁹⁾

조선시대 가장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가장이 “집의 어른”일뿐 공식적인 권한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선회하여 조선은 법적으로 가장의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장을 통해 가구성원을 통제하는 국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가장은 부모-자녀, 남편-부인, 노비 고골-주인 등으로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위치에 놓인 존재였다. 아버지이면서 남편인 사람이 가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조건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개별 경우마다 가장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다. 가장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과 책임은 명백한 반면 누가 가장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경향으로 파악되어 여성은 그 아들 또는 손자의 책임 하에 놓이고, 숙부 또는 남편의 형제, 친정의 오빠 등은 이른바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 놓여 있지 않은 자녀 또는 여성들의 가장으로 논의되었지만¹⁰⁾ 호주와 더불어 가장을 정하는 문제는 조선시대 논

9)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母의 성격과 의미』,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1, 양포이상택교수환력기념논총 편, 집문당, 1998, 265면;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12, 2002;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32~137면. 이밖에 가장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으로 파악된 소설 속 여성에 대한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박영희, 『17세기 소설에 나타난 시집간 딸의 친정 살리기와 출가의인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6).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149면).

10) 정지영, 『조선시대 가장 지위의 구축과정과 국가-<조선왕조실록>의 가장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6,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13.

의 중이고 구성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¹¹⁾

누가 가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개별적이어서 선명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가장의 역할은 비교적 분명했다. 가 구성원을 가르치고 통솔하는 권한과 함께 구성원의 삶을 조선시대 규범에 맞게 단속하고 기획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가 구성원이 호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조선 전기에는 가족원에 대한 규찰-부녀자의 사찰 방문이나 무당을 통한 제사 등 음사를 제한하는 것, 부녀의 탈 것이나 사치에 대한 규제, 혼인이 늦어지는 딸에 대한 책임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처첩 자손 노비 등 가 구성원이 일상 속에서 국가가 정한 세세한 금지법을 잘 지키도록 통제하고 규찰하는 역할을 부과하였다. 그리하여 가장이 가 구성원의 서찰을 검열하는 데까지 미칠 정도로 세세한 구성원의 일상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¹²⁾

조선시대 이래 현실 속에서 가장이란 가문내외사를 주관하는 역할 이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역할이었다. 여기에 부계 직계 중심으로 강화되는 조선 ‘후기’적 경향이 더해지면서 오늘날까지 가장 자연스러운, 혹은 가장 일반적인 가장(家長)에 대한 관념은 한 집안의 대표 남성이라는 것이다. 17세기 작품 <소현성록>의 소씨 가문에서 실질적인 가장이 누구인가의 문제에 접근하려면 조선시대 이래 오늘날까지 형성되어 온 가장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우선 견어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양부인과 소현성의 역할을 견주어 살펴보자.

● 구성원 간의 관계 질서 잡기 : 소경과 서모 석과 사이의 예절-어머니 대하듯 하는 소경을 불편해하는 석과를 두고 양부인은 소경과 모자지의 있으니 비록 석과가 당에 올라갔고 사랑이 뜰에서 예를 올림은 불가하나 석과가 뜰에 서고 사랑이 땅에서 예를 올림은 무방하다는 처분을 내린다.¹³⁾

11) 정지영, 『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와 책임: 법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25집1호, 한국가족학회, 2013, 141면.

12) 위의 글, 3장 ; 정지영, 앞의 글.

13) 21권21책 규장각본 권2, 22면(이 부분 이대본은 “네가 비록 경에게 명칭은 서모지만 또한 모자지의(母子之義)가 있으니 땅에서 절하는 게 무엇이 이상하겠느냐?”로 좀 더 소략한 모습이다.).

● 재산 관리권: 구성원 개인 재산을 부정하고 일체를 양부인이 관리, 배분한다.¹⁴⁾

● 구성원의 생사여탈권: 교영의 실절을 두고 소현성은 소부로 찾아온 교영의 정부(情夫)를 따돌리는 미봉책을 취한 뒤 궁궁한다. 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양부인은 즉각 딸을 불러 독약을 마시게 한다.¹⁵⁾

양부인에 의한 교영의 죽음 과정에서 소현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석파의 원망에, 소현성은 부모가 잘못을 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식으로서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하여, 절대적인 효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애초 교영의 실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의 임시방편적 대처를 통해 볼 때 소현성의 전반적인 행동은 효를 포함한 유교적 이념의 실천, 그를 통한 이상적 가문의 구현 등 보다 상위의 틀로 포획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절대적인 효의 실천은 모친에 대한 지극한 의리 그 이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 문장(門長)으로서 양부인- 가장(家長)이 개별 단위 가정의 대표라면 문장(門長)은 한 집안에서 향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관련 기록들을 참고해보면 가정 범위를 넘어서는 가문 차원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거론할 때나 혼사 등의 행사를 주관할 주인의 부재시 대리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등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대외적 역할이 있었으므로 현실 속에서는 이 역시 가장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다.¹⁶⁾

14) 양부인이 5대손까지 보았어도 집안일을 놓지 않으니, 화·석 두 부인이 또한 예의와 법도를 넘지 않아 방 안의 작은 것도 사사로운 재물과 그릇이 없이 모두 양부인에게 드러 창고 안에 넣었다가 승상과 자기에게 쓸 곳이 있으면 아뢰고 얻어 썼다. 또 비단을 얻어도 다 창고에 넣어 쓸 데가 있으면 고한 후에야 마음에 맞게 내어 쓰니 (권4)

15) 부인이 한번 듣고는 딸이 실절(失節)한 것을 알았다. 그러자 부인은 갑자기 매우 화가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교영을 불러오게 하여 당 아래에 꿰리고 죄를 따졌다. “네가 타향에서 유배 살이를 했으나 몸을 깨끗이 하여서 돌아올 것이거늘 순간 실절하여 죽은 아버지와 산 어미에게 욕이 미치며 조상에게 불행을 끼치니 어찌 차마 살려 두겠느냐? 친정에는 못난 딸이고 시집에는 더러운 여자가 되어 천지간에 죄인이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 자식의 정을 끊어 한 그릇 독주를 주니 빨리 마셔라.”(이대본 권1)

16) 현종 7년 병오(1666, 강희 5) 6월18일 (정묘) : 정언 김정(金澄)이 아뢰기를, “감역(監役) 박순(朴鎔)의 처 조씨(趙氏)는 성격이 본래 쾌락스러운데, 그의 남편이 가까이하는 여종을 질

● 혼인의 최종 결정권: 명현공주와 운성의 사혼을 혼주가 되는 소현성이 극력 반대했으나 결국 최종 결정은 양부인의 손에 있다.¹⁷⁾ 이후 소부로 시집은 명현공주와 운성의 불화, 이어지는 공주의 패행 때문에 일어난 치죄사건의 경우는 가장으로서 소현성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확장되는 지점이지만,¹⁸⁾ 여기서조차 최종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전적으로 양부인에게 있음을 보게 된다. 형부와 예부에 사건을 의뢰하는 한편 황제에게 상소까지 올리며 결연한 처결 의지를 보이던 소현성은 가문의 안위를 생각하여 그치라는 양부인의 짧은 편지에 온전히 승복하지 못하면서도 즉시 진행을 멈춘다.

한편 다음은 운성이 이씨를 양부인 침소에 두는 것이 여승의 말에 따른 것이라 여겨 문지기와 내당 시녀를 치죄한 후 발생한 양부인의 분노 장면이다.

(소현성이) 사죄한 후 당에 올라 태부인의 옆에 앉았다. 태부인은 운성을 불러

투하여 혹독한 형벌을 마구 가하여 끝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고(故) 익풍군 이숙(益豐郡 李湑)이 살아 있을 때에 가까이하던 여종이 있었는데, 그의 처 임씨(任氏)가 질투심이 많고 사납고 성질이 괴팍스러워, 이숙이 죽은 뒤에 그 여종이 두려워 달아나 숨자 그 여종의 어미를 잡아다가 혹독한 형벌을 가해 죽이고는 시체를 도성 안에 버렸습니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법대로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형조로 하여금 그 문장(門長)과 가장(家長)을 함문(緘問)하게 하고, 또 매질을 했던 종을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동춘당집(同春堂集) 별집 제6권 이생(李生) 상현(尙賢)에게 답함 : (…)[문] 혼인날이 겨우 2, 3일 남았는데, 저쪽과 우리 쪽에 갑자기 유복친(有服親 복이 있는 친척)의 상이 났으면 어찌합니까? [답] 신랑과 신부에게 복이 있으면 혼인날을 물려야 하지만, 만약 신랑과 신부에게는 복이 없고, 주인(主人 혼주(婚主))에게만 복이 있다면 문장(門長)으로 하여금 주관해 혼사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네(이상은 국사편찬위원회편 국역본을 인용함). 17) 사람을 시켜 형씨를 내쫓겠다고 물으셨지만, 승상이 고집스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지 6일이 되자 태부인 양씨가 글로써 승상(14번)을 책망하였다. 내가 마땅히 며느리를 아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독 늙은 어미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니, 아들은 고집하지 말고 상의 뜻을 좇아 가문의 화를 부르지 마라. 승상이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가 늘 홀로 되신 어머니를 염려하여 끝은 논의를 세우지 못했으니, 이번에도 설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드디어 답신을 써서 마음을 놓으시라고 아뢰었다.(이대본 권6)

18) 승상이 즉시 붓과 벼루를 내어와 상소를 짓고 곤장 묘당(廟堂)으로 들어가 먼저 형부상서 반영의를 불러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서 알아 (68면)오라 하고 또 예부상서 오문상을 불러 며느리가 시아버지 섬기는 예(禮)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 오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의부(禁義府)로 적어 보내고, 또 상소 하나를 올려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다.(권7)

(99면) 큰 벌을 주고 책망하여 말하였다. “너희들의 죽고 사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비록 늙어서 정신이 흐릿하다지만 내가 어찌 감히 니를 압두(壓頭)하여 내 종 아이의 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심하게 때렸느냐? 너의 무심하고도 소홀한 죄는 용서하기 어렵도다.” 드디어 친히 시종을 부르라고 한 후 상서를 매우 때리며 화를 냈다. 운성이 조모의 위엄과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에 모자를 벗고 죄를 청하여 말했다. “제가 감히 할머니를 업신여긴 것이 아닙니다. 요사한 승려가 집안에 출입하는 것은 집을 망하게 하는 징조이기 때문에 문 지키는 군사를 피어 승려를 집 안으로 들인 시녀를 꾸짖은 것일 뿐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태부인이 더욱 화를 내자 승상이 친철히 말하였다. “운성의 죄는 비록 죽어도 속죄받기 어렵지만 저의 급한 성질이 시비를 일으킨 것일 뿐, 어머니를 업신여긴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제가 운성의 방자함을 다스리겠습니다.” 부인이 들은 채하지 않고 노비를 시켜 운성을 삼십여 대 때려 끌어 내친 후 모든 (100면) 손자와 며느리들을 물리치시니 젊은이들이 바빠 물러났다.(권10)

손자를 향해 죽고 사는 것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아들을 다스리겠다는 소현성의 말을 무시하고 직접 손자를 다스리는 양부인의 모습에서 가문 전체를 호령하는 거침없는 문장(門長)의 위세가 드러난다.

<단락 바꿈>더하여 화부인과 이홍의 갈등 처리 결과는 소현성이 자기 가정에서의 가장 역할조차 온전히 다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내당(內堂)의 시녀들은 부인의 명령을 받들지만 부인의 호령이 중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승상도 또한 스스로 내당의 일을 알지 못하였으며, 외당에 어떤 큰 일이 있어도 모친과 두 누이하고만 의논하여 결정하고 자기 부인에게는 전하여 묻지 않았다.(권4)

남편과 아내의 내외사 관여 범위를 두고 화부인과 갈등한 소현성은 결국 자기 개별 가정의 내사에서조차 소외되고 만다.¹⁹⁾ 이런 양상의 반면에는 문장(門長)으로서 양부인이 자리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 양부인은 본인의

19) 이에 반해 소현성이 외당에서 겪는 일들은 양부인과 두 누이에게 상의되고 있다.

뜻에 거스르는 경우 소현성의 아버로서의 면목도 여지없이 묵살하며 작품 전편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소현성에게 준 적이 없다.²⁰⁾

여기서 효라는 자식 된 도리에 묶어둔 채 절대적 순종을 취한 양부인이 그런 소현성의 모습을 ‘평소에 말마다 맑고 깨끗하고 순종하니 너무 풀어져서 강직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여겼’었다는 서술은 주목된다.²¹⁾ 양부인

20) 소현성이 가장으로서 전면에 나선 양상은 이씨의 누명을 벗기는 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조차 양부인이 사건 처리에서 물러난 것은 화부인과 운명 모자의 방자함에 대한 시위의 일환일 뿐이고, 소현성은 이런 심기를 알아 일일이 아뢰어 양부인의 처치를 받는다. 아래 관련 대목을 인용해 보인다.

운명이 들어와 었드려서 말하였다.“음란한 부인 이씨의 죄상이 등한시할 만한 것이 아니니 오직 아버님께서 밝게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승상이 침묵한 채 말이 없으니 몸을 돌려 태부인에게 물었다.“이 일을 어찌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태부인이 길게 웃으며 말하였다.“내가 너와 이별하고 강정에 간 후 이씨가 죄를 얻게 되어 운명이 글을 가지고 내게 와 물었다. 그 때 내가 이미 간통한 남자의 편(23면)지를 불사르고 이씨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운명 모자가 옳지 않게 여겨 이씨를 심회당에 가두고 나에게 처리해도 되겠는지를 또 묻는 것이다. 이미 내 말은 듣지도 않는데 내가 어찌 다시 이르겠느냐? 그 시어미와 지아버가 다스리니 내가 참견하기가 매우 어색하여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 가히 죄를 판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구나.” 말을 마치고 위엄 있는 거동으로 묵묵하게 말이 없으니 매우 단정하고 엄숙하였다. 승상이 어머니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보고 감히 말을 못하고 주저하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드디어 물어앉아 물었다.“이 일에 있어 어머니의 가르치심을 바랍니다.”

부인이 말하였다.“내가 늙고 혼미하니 어찌 알겠느냐? 다만 가뉘놓은 매섬에게 엄히 따져 물으면 일이 드러날 것이다.” 운명이 말하였다.“매섬 등을 이미 문책하여 이씨의 죄를 알아냈으니 새로이 따져 물을 일이 아닙니다.” 승상이 갑자기 매우 화를 내며 꾸짖었다.“네 죄가 태산 같은데 어찌 알지도 못하고 감히 할머니의 말씀(24면)을 거역하느냐?” 드디어 화가 크게 나서 관복을 찾아 입고 외당으로 나가 죄를 다스리려고 하니 집안이 물 끓듯 하면서 승상의 처치를 기다리고 소생 등은 서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부친을 모시고 나갔다. (권12)

21) 작품 안에서 소현성이 처음으로 어머니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여승의 출입으로 인한 논쟁 대목에서는 소현성의 부정적인 반응에 양부인은 늘 순종하고 풀어져 현명하지 않다고 여긴 아들의 간쟁에 오히려 기뻐한다. 양부인과 소현성의 관계, 소현성의 자질을 바라보는 양부인의 관점 등이 미묘하게 표출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태부인이 비록 옳게 여겼지만 승상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오늘 처음으로 대단하였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자 하여 다시 말하였다.“이 말이 옳지만 신령스러운 스님의 말도 분명하며 또 내가 이미 허락을 하였으니 바꾸지 못할 것이다.” 승상이 기운을 나직하게 하고 눈썹을 온화하게 하여 다시 간언을 드러 말하였다. (...) 이렇게 간언을 하는 것이 능히 온화하지만 단정하고 엄숙하여 위엄이 당당하였다. 태부인이 기쁨이 가슴속에 가득하여 다만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일의 이치가 이와 같다면 내가 또한 어찌 불도를 구하겠느냐? 너는 마음을 쓰지 마라.” 승상이 명을 받들어 절을 하였고, 소씨 형제들은 어런 듯 말을 하지 않고 승상을 모시고 나갔다. 그 후에 태부인이 말하였다.“(...) 승상이 평소에 말마다 맑고 깨끗하고 순종하니 너무 풀어져서 강직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여겼는데, 오늘 간쟁하는 것(89면)을 보니 또한 풀어지지 않았구나.” (권10)

이 그렇지 않다고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기뻐했다는 이후의 서술과는 별개로 소현성의 자질에 대해 일말의 불신을 품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양부인이 소현성에게 주도적 역할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가권의 모녀 승계와 그 배경

양부인은 115세가 되어 세상을 떠난다. 이때 양부인의 유언 가운데 하나는 가권을 소월영에게 준다는 것이다. 그것도 비록 오랜 시간을 아낀 것이라 예언하고 있지만 중신토록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선 ‘후기’는 물론이고 오늘날의 감각으로도 비현실적이라 느껴지는 이러한 설정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 소현성의 자질에 대해 양부인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면서 소월영과 소현성의 남매 관계를 우선 살펴보자.

후원 출입을 둘러싼 화부인과 이흥의 갈등은 소현성과 화부인 간의 부부 갈등으로 옮겨간다. 소현성이 믿고 집안 대소사를 맡긴 이흥을 화부인은 자신의 명을 거절한다며 주인 된 입장에서 다스렸는데, 소현성은 부인이 바깥일에 관여하는 것이 규수로서의 예에 어긋난 것이고 장차 집안에 화를 가져올 행실이라며 질책한 것이다. 주인과 고용인이라는 신분 차이에 주목했던 화부인과는 달리 소현성은 남녀의 수직적 위계를 전제로 부인의 직분을 말하며 화부인을 압박하고, 이런 소현성의 태도를 화부인은 남편의 애정 결핍에 대한 열등감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이는 갈등을 조정하라는 양부인의 명으로 소월영이 가세하면서 반전된다. 소월영은 화부인을 대신하여 쓴 답서에서 나라에 황제 황후의 높음이 같듯이 집안에 가부와 가모의 중함이 같다고 하면서 성인이 품은 삼강오륜에도 속하는 부부지간이 하관과의 관계보다 더 중하다는 논지를 펴나. 더불어 별거 운운하는 소현성에게 그것은 부부관계를 저버리는 것이지만 그

래도 삼종지도를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면서 명분론에서 밀리지 않는다.

누이가 쓴 것임을 짐작한 소현성은 할 말이 없지 않으나 누이와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시를 써 둔다. 나중에 이를 본 소월영은 끝까지 성현의 가르침 운운하면서 자신의 논리가 논박의 여지없이 명쾌한 것이라 주장한다.²²⁾

22) “제가 비록 무례하지만 어려서부터 성현(聖賢)의 글을 읽어 예의를 조금 압니다. 그옥이 생 각건대, 나라의 황후와 황제가 높으신 것이 같고 집의 가장(家長)과 가모(家母)가 중요함이 같습니다. 군자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근본이라고 하지만, 자고로 남자가 나라의 일을 다스리면 집의 일을 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상이 나라의 큰 신하로 조정의 일을 살피느라 겨를이 없어 이홍에게 맡겨 집의 내외사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은 우리 집안의 사람이 아니며 가까운 절친(切親)도 아니고 높게는 지기(知己)도 아니니, 비록 사람됨이 근실하다고 하지만 어찌 부중(府中)의 자잘한 일을 다 알게 하겠습니까? 홍이 무거운 권을 맡고 있으므로 종들이 아첨하느라 집안의 조그만 일도 먼저 홍에게 물은 후에 우리의 말을 좇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옥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저의 처사가 하찮아 상공의 가모(家母) 소임을 능히 못하고 또 내조하는 공로가 없어 아래관리에게 집안일을 맡기는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경치를 구경하려 한 것은 승상이 없기를 (117면)기다려 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평안하여 여러 자녀와 함께 노시니 한가한 때를 타 소·윤·석 세 부인과 더불어 후원을 보면서 산수(山水)의 성향을 보고 내년의 누에치기를 상의하려 한 것이지 경치를 구경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홍을 잡아맨 것은 그가 무례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상공도 오히려 저를 모욕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그가 가신(家臣)으로서 어지러운 말을 하니 갑자기 성이 나서 참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는 승상이 집을 다스리는 데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만약 승상이 외당에 계셨다면 제가 그 사이에서 호령하지 못하였겠지만 상공이 조정에 들어가 돌아올 때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집에 주인이 없다고 여겨 종들과 홍이 무례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집의 여주인이 하나의 규범을 굳게 지켜 무너져가는 위의를 붙들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부터 제가 비록 외람되고 당돌하기는 했지만, 홍을 매어 놓고 어머니께 아뢰어 다스려 비록 승상이 안 계시지만 감히 모든 일을 무례하게 못하고 집을 바로잡는 이 기이함을 탄복하게 하며 알게 하고자 함이었지 마음대로 행하여 도에 넘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을 치지 않고 내당의 시녀를 잡아내어 치니, 이는 시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다스(118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이로 보건대 부부의 의리를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에 넣지 말고 부중(府中)의 아래관리를 부부 대신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옛 성현들이 어찌 잘못 알고 중요한 아래관리는 빠뜨리고 가벼운 부부를 넣었는지 이상합니다. 또 부부 사이를 말하지 않고 저를 벗으로 여기더라도 저는 상공을 안 지 열두 해가 되었고 홍은 다섯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후(先後)를 분별하지 않으시니, 홍을 위하는 정성은 지극하다고 할 만하지만 저에게는 박절하시군요. 각각 따로 집에 있자고 하시는데, 여자의 삼종지의(三從之義)는 중요한 것입니다. 상공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잊어 버리셨지만 저는 ‘여자는 반드시 지아비를 따르고 부모형제를 멀리 한다’는 말을 지키려 합니다. 상공이 저를 버린다면 뱃속의 아이를 품고 의지하여 윤기(倫紀)의 삼종(三從)을 오로지 지킬 것이니 마음대로 처치하십시오. 광광의 아내와 여후(呂后), 무축천(武則天)에 비하시니 감히 뭐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다만 무축천(武則天)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여후(呂后)는 어떤 계집이었습니까? 이 글을 보니 모골(毛骨)이 쭈뼛해집니다. 한없이 넓고 푸른 하늘만이 내 뜻

화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직적 남녀관계를 앞서있던 소현성은 소월영에 대해 그것이 자신을 책하는 것이라 깨달은 순간 더 이상의 논쟁을 삼간다. 할 말이 없지는 않다는 표현이나 소월영의 답시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으로 자신의 생각을 미처 다 펼쳐 보이지 못했음을, 그래서 좀 더 대화적 상황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듯하지만 본인이 주도하지는 못한다. 여기에서 동기간이라도 연장자인 누이 소월영에 대한 깍듯함, 예우가 느껴진다.²³⁾ 이들 남매기간에는 남녀지별보다는 동기간의 수평적 관계 관념이 연장자를 예우하는 자연스러운 수직적 관념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들 남매의 깍듯함과 예우를 바탕으로 하는 자연스러움이 다음의 경우 그리 부드럽지만은 않다.

소부인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드디어 일어나서 좌우를 돌아(33면)보며 말

을 알 것이고 남들은 모를 것입니다. 제가 만약 높은 가문의 후환이 될 사람이라(119면)면 밝게 알고 처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무제(漢武帝)의 경우와는 달리 강한 가신(家臣)이나 종들이 없으니 나 또한 없어야 할 겁니다. 빨리 처단하는 글을 내리시어 후에 세상의 변란과 골육의 죽음을 막으십시오. 마음을 바꾸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동기(同氣)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의리로 맺은 동생이 더욱 중요하지요? 종이를 대하여 화씨의 좁은 말을 물리치고 뜻이 깊은 말로 가르쳐 나를 책하셨군요. 한 번 보고 묵묵히 있다가 두 번 보니 이는 곧 누이가 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웃었습니다. 내 말이 궁해진 일이 없지만, 없는 체하며 그칩니다.”(…)

“이렇듯 밝고도 밝은 총명이 있는데 어찌 그 때에는 아득했ند고? 이상하구나. 너무 스스로를 믿지 마라. 일찍이 확실히 말하지 않은 것을 모함하는 것은 그르고도 그르(122면)다. 그러니 네가 직접 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성현의 경계를 잊지 마라. 그리고 의리로 맺어진 동생이 더 중요하냐고 했는데 그것은 맞다. 너도 한씨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 나도 너를 본받았다. 또 네가 말이 궁해진 것이 아니라 하면서 말제주를 자랑하였지만 내가 보건대 진실로 궁해진 것인 듯하다. 옛날 탁문군(卓文君)의 <백두음(白頭吟)>과 소혜(蘇蕙)의 <적금도(織錦圖)>가 공교하지만 구차함이 심하다. 그러나 화씨의 글은 이치가 통달하여 조금도 구차하지 않고 명백하니, 죽히 옛 사람의 부질없는 수고와 괴로운 시 짓기보다 배나 낫다.”(권4)

23) 이에 대해 백순철은 “여성들이 지위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홍과 부인들의 갈등은 가사권(경제권을 포함하여)을 둘러싼 사건으로서 가부장제의 정착과정 속에서 가장의 권력이 강화되고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가 점차 배제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분석한 바 있다(앞의 글, 145면). 부인들과 이홍의 갈등으로 보는 것, 가장의 권한 강화를 보여준다는 해석은 본 논지와 상반된다. 누이의 개입으로 화부인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소현성의 말이나 이 사건의 결과 소현성이 가정 내에서 완전히 손 떼게 되는 것을 볼 때 가장의 권한 강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였다.

“걸음을 옮겨 길을 인도하여라.” 말을 마치고 천천히 걸어서 중당(中堂)에 이르러서는 협문(夾門)을 막았다는 소리를 듣고 굽은 난간을 돌아가 백화헌에 이르렀다. 그러자 승상이 급히 합문(闔門)을 닫고 대청에 들어와서 물었다. “누이께서 어찌 나와 계십니까?” 부인이 말하였다.

“내가 특별히 나와서 아우 부자의 정의를 완전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들어보겠는가?” 공이 읊(揖)하고 감사하며 말하였다. “어떤 가르치실 일이 있습니까?” 소부인이 정색을 하며 말하였다. “그대가 운명을 큰 매로 다스리니 그 죄는 가벼우나 벌이 무거워 과도한 것에 가까우니 모름지기 그만하여 용서하기를 바라네.” 승상이 문득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의 죄상은 놀라움을 참을 수가 없으니 만일 중하게 치지 않으면 여러 아이들의 무식을 돋우는 것입니다. 아직 두어 산(算) 장 더 친 후 놓아줄 것입니다. 누이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사졸들이 모여 있어서 자리가 어수선하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부인이 문득 화를 내며 (34면) 말하였다. “너는 부자지간의 의를 가볍게 여기지만 내가 어찌 조카를 구하는 일에 있어 어수선함을 개의하겠느냐?” 말을 마치고 손을 들어 합문을 열려고 하니 승상이 매우 황급하여 즉시 사졸을 물리치고 운명을 용서하였다. (권12)

소현성이 아들 운명을 벌하는데 그것이 과도하자 운성이 문장(門長)인 양부인에게 부친 만류하기를 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이에 화부인의 자결 소동과 석부인의 간청 등이 더해져 소월영이 마지못해 나서게 된 상황이다. 누나가 백화헌에 이르자 소현성은 합문을 닫고 대면하지 않는다. 소월영은 아우를 가르치겠다며 자식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멈추라 한다. 소현성이 문 너머에서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자 소월영은 화를 내며 소현성이 닫아놓은 문을 밀친다. 이에 소현성이 놀라 즉시 상황을 종료한다.

양부인도 자기 말을 거역한 운명을 아버지가 되는 소현성이 치죄하는 것을 방임하는 가운데 소월영 또한 이를 만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수 없이 나서게 된 상황에서 느끼는 소월영의 짜증스러운 소현성과의 대화를 다소 단도직입적으로 끌고 간다. 그런 만큼 강력, 강경하다. 문을 걸어 닫고

그 너머에서 구구히 아들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설득하지만 끝내 무시되는 소현성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들 남매의 관계 질서는 소현성의 입장에서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소현성을 버겁게 했을 이런 소월영의 무게감은 양부인의 암묵적 지시 아래 그 역할을 대리 수행해 온 경험의 누적을 통해 가능했을 것이다. 여기에 소현성의 자질에 대한 양부인의 부정적 인식을 함께 고려하면 양부인의 가권을 딸에게 승계시킨 작품 말미의 설정은 작품 전편을 통해 준비된 것이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지점이라 여겨진다.

4. 가권의 모녀 승계를 통해 드러나는 가문의식의 지향

양부인은 실절한 교영을 두고 ‘친정에는 못난 딸이고 시집에는 더러운 여자가 되어 천지간에 죄인’이라 했다. 그런가 하면 명헌공주와의 혼인을 극력 반대하는 소현성에게 ‘절개를 지키는 것이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니, 아들은 고집하지 말고 상의 뜻을 좇아 가문의 화를 부르지 마라’ 라고 했다. 작품 전편을 통해 양부인의 논리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가문이다.

<소현성록>을 양부인이 가진 가문 부흥의 꿈을 실현해 가는 작품으로 볼 때²⁴⁾ 이 작품의 말미 ‘소가촌’(소씨 동성마을)의 형성은 이러한 양부인의 꿈이 최종적으로 구현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종신토록 소월영에게 가권을 물려준다는 것에 더하여 또 하나 양부인의 유언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살지 말라는 것이다.²⁵⁾ 이는 소현성의 유언으로, 이후 소운성과 아수들의 혈맹으로 계승되어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작품 초반 딸도 아들도 없어 궁궁하던 시절, 두 딸을 낳고 임신 중 당한 남편의 죽음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비감을 자아냈다.

24)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한국고전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에서 가문의 번창으로 본 양부인 욕망을 참조.

25) 화씨는 성품이 거칠고 좁아 집안의 천여 명의 위아래 사람을 원망 없이 거느리지 못할 것이고, 석씨는 차례가 아니니, 네가 마땅히 내 대신 가권(家權)을 들어 자손들이 따로 나가 사는 것을 금하고 잘 거느려 옛 법제를 고치지 마라.(…) 장씨 집안이 대대로 함께 산 것을 본 받아라. (권15)

이런 양부인이 소망한 세상은 자손의 무한한 번성이었을 것이다. 이윤배반적으로 다쳐제 질서를 완벽히 재현한 것은 물론이고, 결혼한 딸(소월영)도 손녀(소수빙)도 우여곡절 끝에 모두 데리고 일가를 이루었다. 여기에 역모에도 거짓 자백하지 않고 곳곳이 죽음을 맞은 아까운 사위에 대한 추모로 그와 대비되게 실절이라는 치명적 결함과 그 때문에 딸을 직접 죽여야 했던 악몽 같은 기억을 환기하면서까지 이들에 대한 제사도 빠뜨리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런 양부인이 가진 가문의식의 지향이다. 아들 딸 양계를 아우르는 이런 가문의식은 분명 대하장편소설 연구사적으로 상투적이다 싶을 만큼 널리 언급되는 ‘가문의식’, 보다 직접적으로 부계 적장자 중심의 가부장제를 구현하는 조선후기적 인식과는 변별되는 것으로 보인다.²⁶⁾ 물론 아들 딸을 대등한 관점에서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외손봉사를 하게 하는 부계우위의 양계적 계승방식을 따르기도 하는데²⁷⁾, 이는 조선후기 부계 친족체계가 일반화되면 오히려 양자 입양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²⁸⁾에서 후기적 가문체계, 가문 인식과 변별된다. 따라서 <소현성록>의 가문의식은 조선‘후기’적 가문의 틀로 살피기보다는 보다 앞선 시기의 상황과 결부지어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17세기 동아시아 전란을 배경으로 하는 <최척전>이 서사 전개를 통해 형성한 가문의 모습이 최척과 옥영 두 사람의 부모는 물론이고 며느리의 부모들까지 아우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최척 일가의 이합집산은 사실에 기초한 기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논의되는데,²⁹⁾ 이렇게 양계를 아우르는 일가 집단의 형성이 17세기 <소현성록>에도 동일하게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현성록>이 보여주는 양계를 아우르는 가문의 형성과 이를 위한 가권의 모녀 승계는 18, 19세기와는 다른 17세기 현실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하장편소설의 향유 집단이 선택한

26) 작품 초반 교영을 두고 양부와 소부 두 가문을 더럽힐 것이라 여긴 점에서도 양계를 아우르는 가문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27) 소운명의 아내 이씨의 경우에서 외손봉사를 볼 수 있다.

28) 김미영, 『동성마을 정착과정에 나타난 친족이념의 변천 양상』, 『실천민속학연구』11, 실천민속학회, 2008, 166면.

29) 김종철, 『전기소설의 전개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연구』28,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44~45면.

문학적 대응이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의 가족사적 변천에서 주요한 한 요인은 상속 관행의 변화에서 찾아진다. 그런데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까지 조선의 상속 관행은 자녀 균분상속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자손이 번성하면서 균분 분할 상속이 이루어지면, 이는 단위가족의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17세기 초 전란의 영향으로 전답의 황폐화가 일반화되었던 상황까지 가세하면서 상속 관행은 장자를 우대하는 차등상속으로 이행되었고, 여기에 종법제의 도입과 강화라는 이론적 뒷받침이 작용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장남 이외의 단위가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종족마을과 문중의 형성으로 나타나게 된다.³⁰⁾

여기서 <소현성록>의 양부인이 소망한 자손의 무한한 번성³¹⁾을 이 작품이 산출되던 17세기 중후반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지어 보면 일차적으로는 자손의 무한한 번성이 가문의 번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재산 분할을 통한 자손 분가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부인이 5대손을 볼 때까지 가사를 놓지 않으면서 실천한 재산의 중앙집중식 관리와 따로 살지 말라는 강력한 유언은 자손의 무한한 번성이 이론 가문의 인적 번성이 재산의 분할, 분가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따라서 ‘소가촌’은 단위가족으로의 분화가 가져올 가문의 경제력 약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유 경제 친족집단으로 볼 것이다.³²⁾

<소현성록>은 작중에 집안이 가난하다는 설정은 없다. 아들의 작위가 높아짐에 따라 창고가 넘칠 지경이라는 서술까지 있고 보면 가난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 초반의 상황은 소부의 경제

30) 김필동, 『17세기 사족 문중의 형성』, 『사회과학연구』20권3호,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2009.

31) 작품 말미에는 소경의 친손자대에 대한 나열과 더불어 ‘외손도 번성하니’ 하면서 그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다.

32) 윤경의 장자인 세현과 윤성의 장자인 (88면)세광 등이 (...) 부모의 뜻을 이어 모든 속모들을 섬겼다. 속모들이 수명을 다한 후에는 그 사촌들을 다 데리고 자운산으로 들어와 한 집안에서 살며 의식(衣食)을 골고루 나누니 사람들이 탄복하였다. 대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고 15대까지 자운산에서 사니, 장현동 100리의 들이 좁아 끝까지 앞의 입구를 밀어내고 완룡담까지 집을 지어 현성공의 자손이 수천 명에 이르도록 자운산에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이 이름 지어 남문 밖을 ‘소씨 집안의 마을’이라고 하였다. (권16)

적 현실이 가난에 가까웠을 것임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즉 8대독자로 평생을 처사로만 지내다가 죽은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이 죽으면서 장인에게 아내를 의탁하고 있는 상황 등을 통해 볼 때 작품 초반 소부의 위기는 단순히 자손 없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실제 작품에서는 가난과는 조금 다르게 끊임없이 검약을 강조하고 있고,³³⁾ 이런 점은 양부인이 소현성에게 하는 유언 가운데 자신의 염을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복으로 하라는 강력한 주문에서도 읽을 수 있다.³⁴⁾ 이런 검소함에 대한 강조를 가문이 아닌 가정 단위의 삶을 지향하는 수단으로서의 ‘사사로운 재물’ 소유 부정과 분가 금지를 아울러 읽을 때 <소현성록>이 지향하는 가문, 가문의식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즉 양부인의 소망으로서 <소현성록>이 형상화하는 가문의식은 후대 별벌의식의 표출로 드러나는 여유롭고 풍요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보다는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을 통한 가문 키우기에 보다 긴박되어 있다.

<소현성록>의 소부 구성원들은 권력과 재력을 모두 소유한 안정된 별벌로서의 여유로움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문 지키기, 키우기에 몰두한다. 작품 말미에 설정된 운숙의 아들 세명의 반역과 그에 대한 운성의 처단(권 14)은 작품 초반 교양의 처단과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 소현성에서 그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작품 시작에서 말미에 이르기까지 가문 인식, 가문 구성원 활동의 층위나 지향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³⁵⁾ 이런 지향 속에서 양부인이 가관 승계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명확해 보인다. 이제 ‘집안의 천여 명 위아래 사람을 원망 없이 거느’려 분가(分家), 분재(分財)를 막을

33) 조혜란, 앞의 글에서 검소함과 화려함에 대한 상호호순된 서술 분석 참고.

34) “(…) 나는 나이 많을 뿐 아니라 박명헌 죄인이며, 평상시에 천과 색깔 옷을 보통 사람들보다 과하게 입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생사에 다름이 없으니 (56면)관 안에 염하여 입히는 것과 상(喪) 치를 때 쓰는 도구들을 모두 흰 것으로 하고 조금도 색깔 옷으로 넣지 마라. 만약 듣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35) 이 지점에서 본고는 <소현성록>이 추구하는 가문의 지속과 변창을 [국문장편소설에 보이는 가문 중심성이 갖는 세속성과 맞물려 이해되는] 유교적 세속주의로 규정하는 김경미(앞의 글)의 입장이나, 엄숙한 태도로 유교적 이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 저간에는 부와 지위를 획득한 지배계층의 세속주의, 가문 이기주의가 드러난다고 본 조혜란(앞의 글)의 입장과 달리한다. <소현성록>의 가문의식이나 그 지향이 기대권 집단으로서 별벌가의 영속을 추구하는 이기적 가문 중심과는 달리, 17세기적 현실 속에서 이념이나 제도, 관습 등의 복잡다단한 변화, 분가의 외중에 가문의 몰락을 피하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 것이다.

5. 결론

<소현성록>은 대하장편소설의 초기작으로서 17세기 중후반에 산출되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무수한 관련 연구의 지표 작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품의 산출시기 17세기 중후반은 이 작품의 가문소설이라는 내적 특징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소현성록>이 산출된 17세기 중후반은 조선시대 가족사 흐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17세기 중후반 가족 체계의 변화는 당대 지배 이념, 경제 체제, 여러 가지 관계 질서 등 사회 전영역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³⁶⁾ 그리고 이 변화는 인과적 선후를 애초부터 설정하기 어렵도록 사회 전반에서 다발적으로 그러나 각각의 속도와 개별적인 형편에 맞춰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등장한 <소현성록>은 가문이라는 집단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가문의 건설과 그 집단화의 구현은 양부인에서 소월영으로 이어지는 가권의 모녀 승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집단의 구성은 부계 중심의, 혹은 부계직계중심의 ‘후기’적 관계가 아닌, 양계를 아우르는 방식을 취했다.

<소현성록>에서 확인되는 양계를 아우르는 가문 형성의 양상은 비슷한 시기 산출된 <최척전> 등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최척전>이 조선의 17세기적 현실을 강하게 반영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현성록>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그 특징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를 아우르는 가문의 형성과 이를 위한 가권의 모녀 승계는 18, 19세기와는 다른 17세기 현실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하장편소설의 향유 집단이 선택한 문학적 대응인

36) 때문에 관련 전공자조차도 인과의 선후를 선명하게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상관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들의 긴밀한 관련을 반증하는 것일 터이다(김필동, 앞의 글, 190면 주3).

것이다.

출가의외인의 논리로 딸을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권을 승계시키는 ‘발칙하기’까지 한 이런 설정이 여성주의적 해방의 논리나 자유분방함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가문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 스스로 구성원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이 보여주는 가문의식은 생존과 직결된 절박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하장편소설의 초기작품으로서 <소현성록>의 이러한 가문의식적 지향은 후대 작품군과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본고가 살핀 <소현성록>의 가문의식은 대하장편소설 장르군이 담지하고 있는 상층벌열의식의 일환으로서 가문의식이 각 시기에 따라 일정한 편차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초기적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소현성록>(15권 15책, 이대 소장본; 조혜란 등 역주, 『소현성록』1~4, 소명출판, 2010).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강성숙, 『조선후기 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 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 『여성문학연구』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42면.
-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1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28면.
- 김미영, 『동성마을 정착과정에 나타난 친족이념의 변천 양상』, 『실천민속학연구』11, 실천민속학회, 2008, 165~195면.
- 김미영, 『한국의 집과 일본의 이에』, 『민속연구』6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6, 128~140면.
- 김연순, 『18세기 중법사회의 형성과 사대부의 가정교화-가훈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83, 한국사회사학회, 2009, 117~156면.
- 김정녀,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 방식』, 『한민족문화연구』28, 한민족문화학회, 2009, 33~61면.
- 김종철, 『전기소설의 전개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연구』28,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31~51면.
- 김필동, 『17세기 사족 문중의 형성』, 『사회과학연구』20권3호,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2009, 31~47면.
- 박미혜, 『조선중기 수령의 가족부양으로 본 장자의 역할과 가의 범위』, 『사회와 역사』7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187~218면.
- 박미혜, 『16세기 양반가의 가족관계와 가부장권』, 『고문서연구』21, 한국고문서학회, 2002, 51~73면.
- 박병호,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2권1호, 일지사, 1976, 67~93면.
- 박병호, 『한국가부장권법제의 사적 고찰』, 『한국여성학』2, 한국여성학회, 1986, 50~94면.
- 박영희, 『17세기 소설에 나타난 시집간 딸의 친정 살리기와 출가의인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6, 251~289면.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母의 성격과 의미』,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上, 양포이상태교수환력기념논총 편, 집문당, 1998, 263~282면.
-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5~39면.
- 배상훈, 『조선후기 분할상속관행의 지속에 대한 소고』, 『한국민족문화』34, 2009,

203~235면.

-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장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27~154면.
- 안호용, 『조선시대 가족구조 변동의 기준과 가족사의 시대구분』, 『한국사회』13집2호, 2012, 39~81면.
-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12, 2002, 101~126면.
- 양민정, 『초기 가문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가문의식-〈창선감의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37~64면.
- 양민정, 『대하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연민학지』8, 연민학회, 2000, 131~167면.
-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 계승과 혈연의식』, 『고전문학연구』21, 한국고전문학회, 2002, 5~34면.
-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화와 의미』, 『국어교육』98, 한국어교육학회, 1998, 345~367면.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 『동양학』2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3, 189~205면.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범-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127~178면.
- 정공식, 『한국의 가계계승에서 여성의 지위』, 『법사학연구』47, 한국법사학회, 2013, 7~50면.
- 정영신, 『남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은지논총』18, 은지학회, 2008, 250~270면.
- 정영신, 『여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동방학』13,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7, 146~182면.
-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의 시원-〈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5면.
-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되는 행복』, 『동방학』2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1, 57~84면.
- 정선희,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소현성록〉 연작을 중심으로』, 『배달말』45, 배달말학회, 2009, 425~460면.
- 정지영, 『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와 책임: 법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25집1호, 한국가족학회, 2013, 121~149면.
- 정지영, 『조선시대 가장 지위의 구축과정과 국가-〈조선왕조실록〉의 가장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6,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13,

125~159면.

정지영, 「조선후기 호주승계방식의 변화와 중법질서의 확산:17•8세기 『단성호적』에 나타난 과부와 그 아들의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18권2호, 한국여성학회, 2002, 5~35면.

조 은, 「유교적 가부장제와 여성호주 가족」, 『한국여성학』21, 한국여성학회, 2005, 39~68면.

조 은, 「가부장적 질서화와 부인권의 약화」, 『한국여성학』16권2호, 한국여성학회, 2000, 5~34면.

조준호, 「17~18세기 영양지방 한양조씨의 문중연구-사족 가문의 확립과 변천의 한 사례-」, 『북악사론』4, 북악사학회, 1997, 161~239면.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4, 1998, 293~327면.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27, 2009, 73~107면.

Succession to patriarchal rights in <So Hyun Sung Rok>

Seo, Jung Min

<So Hyun Sung Rok> appeared at the mid-to-late of the 17th century as roman-fleuve's early work. We should take this times into consideration with <So Hyun Sung Rok>'s consciousness of the family. From the mid-to-late of the 17th century downward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has been changed.

The changes were interlinked with the entire spectrum of social system's change. It were individually under ways, and it's difficult for setting up the order the causal. In these historical backdrop, <So Hyun Sung Rok> exemplified the formation of family. And it was possible, courtesy of succession to patriarchal rights between mother and daughter. The constituent of family were both maternal line and the male line, it is not by following the system of the late of Chosun Dynasty. These aspects are distinctions between <So Hyun Sung Rok> as roman-fleuve's early work and later works.

Keywords: latter period Chosun Dynasty, roman-fleuve, <So Hyun Sung Rok>, consciousness of the family, the rights of a patriarch, patriarchal rights

접수일자: 2014. 9. 30.
심사기간: 2014. 10. 1. ~ 2014. 11. 10.
게재결정: 2014. 11. 10.